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주소 : (613-813)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로 108번길12 6층

대표 : 윤영태 · 복성경 전화 : 051-802-0916 팩스 : 051-711-7415

http://www.bssiminnet.or.kr E-Mail:buun1@hanmail.net

수 신 : 각 단체 기관 및 언론사
발 신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담당 : 박정희 사무국장)
날 짜 : 2016년 4월 7일(목)
제 목 : [보도자료] 20대 총선 ‘지역 미디어 공공성 의제’ 답변 결과

[보도자료] 지역미디어 공공성 의제 답변 결과

1. 귀사의 발전의 기원합니다.
2.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부산 지역 유일의 언론 관련 시민단체로 지역 언론을 감시하고, 동시에 미디어 공공성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3. 20대 총선을 맞아 부산민언련은 두 가지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전국의 8개 지역 민언련과 함께 <10대 지역미디어 정책의제>에 대해 원내정당에 공약채택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다시 그 중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부산민언련이 독자적으로 부산지역 18개 지역구 후보들께 <지역미디어 공공성 4대 의제>를 보내고 찬반의견을 물었습니다.
4. 질의 결과, 전국의 지역민언련이 공통으로 질의한 <10대 지역미디어 정책의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답변해왔고, 부산민언련의 <지역미디어 공공성 4대 의제>에 대해서는 부산지역 56명 후보 중 27명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을 보내 온 정당과 후보들은 대부분 해당 의제에 ‘찬성’한다고 밝혀 지역언론 활성화와 미디어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5. 하지만 부산민언련이 질의한 <지역미디어 공공성 4대 의제>에 대해서 절반 정도의 후보자만 답변을 보내온 것은 여전히 지역미디어 의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역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지역사회 공론장 역할을 수행할 언론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6. ‘지역 미디어 공공성 의제’ 답변 세부 결과를 첨부합니다.
※ 별첨자료 1. <지역미디어 공공성 4대 의제>에 대한 답변 결과
※ 별첨자료 2. <지역미디어 공공성 10대 의제> 세부 사항.

끝.

〈지역미디어 공공성 의제〉 질의 결과

1. 추진 경과

- 질의서 전달 : 3월 28일~29일
- 질의 대상
 - ▶ 부산지역 18개 지역구 총선 후보 56명
(※3월 28일 기준 선거사무소 주소가 공개된 후보에게 전달)
 - ▶ 정당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독교자유당, 민주당
- 회신 기간 : 4월 5일

2. 답변 결과

1) 〈지역미디어 공공성 4대 의제〉 부산지역 총선 후보자 질의 결과

- 부산지역 후보에 질의한 결과 총 56명 후보자 중 27명의 후보가 답변을 해왔습니다. 정당 별로는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3명, 무소속 6명이 답변에 응해 새누리당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 답변을 보내온 후보들은 대부분 찬성 의견을 냈으나, 조건부 찬성과 당직을 맡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응답률이 48%에 불과한 것은 후보자들이 지역 미디어 공공성 의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이 훼손된 현재의 미디어환경에 대해 정치인들이 더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겠다는 나선 후보들이 지역 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언론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2) 〈지역미디어 공공성 10대 의제〉 원내정당 질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개 정당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대 의제에 모두 찬성 했고, 대부분 이미 정당 공약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4개 의제에 찬성했고, 6개 의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집권 정당임에도 지역 언론 정책에 대한 무관심한 것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 부산민언련은 앞으로 지역미디어의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선자를 견인하고 각 정당에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 세부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세부 질의 결과

1) <지역미디어 공공성 4대 의제> 부산지역 총선 후보자 질의 결과

(질의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응답자(총 27명)

정당명	답변후보/ 전체후보자 수	응답 후보
새누리당	3/18	김무성, 김척수, 조경태
더불어민주당	13/18	이재강, 김비오, 김영춘, 조영진, 전재수, 유명민, 윤준호, 조용우, 김해영, 배재정, 최인호, 박종훈, 정진우
국민의당	2/3	유정기, 배준현
정의당	3/4	노창동, 이병구, 이창우
무소속	6/13	김재하, 박건목, 안준영, 오승철, 이선자, 최지웅
합계		27명

○ 항목별 답변 내용

지역미디어 공공성 4대 의제	찬성	반대	기타 의견
1. 불법 부당한 언론장악과 언론인 해직 관련 청문회 개최	25	1	답변할 수 없음1
2.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언론) 관련 공적 기구 위원 선임시 지역 대표성 보장	26	0	답변할 수 없음1
3. 지역신문발전위원회·방송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지원기금 확대	26	0	답변할 수 없음1
4. 시민미디어·소수독립언론 활성화 정책 강화	25	0	답변할 수 없음1 조건부 찬성 1

○ 응답 후보별 답변 내용

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1.불법 부당한 언론장악과 언론인 해직 관련 청문회 개최	2.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언론) 관련 공적 기구 위원 선임시 지역 대표성 보장	3.지역신문발전위원회·방송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지원기금 확대	4.시민미디어·소수독립언론 활성화 정책 강화
중구영도구	새누리당	김무성	답변할 수 없음	답변할 수 없음	답변할 수 없음	답변할 수 없음
	더불어민주당	김비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무소속	이선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새누리당	유기준	무응답			
서구동구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무소속	임정석	무응답			
부산진구갑	새누리당	나성린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무소속	오승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부산진구을	새누리당	이현승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조영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국민의당	이덕욱	무응답			
	무소속	김재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남구을	새누리당	서용교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무응답			
	국민의당	유정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남구갑	새누리당	김정훈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이정환	무응답			
북강서구갑	새누리당	박민식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북강서구을	새누리당	김도읍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국민의당	정규룡	무응답			
해운대구갑	새누리당	하태경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정의당	이병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운대구을	새누리당	배덕광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찬성	찬성	찬성	조건부 찬성
	무소속	최선명	무응답			
사하구갑	새누리당	김척수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무소속	전창섭	무응답			
	무소속	박태원	무응답			
사하구을	새누리당	조경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더불어민주당	오창석	무응답			
	국민의당	배관구	무응답			
	정의당	유홍	무응답			
	무소속	안중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무소속	최지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금정구	새누리당	김세연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박종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정의당	노창동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연제구	새누리당	김희정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수영구	새누리당	유재중				
	더불어민주당	김성발				
	국민의당	배준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무소속	장제원	무응답			
기장군	새누리당	윤상직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무소속	박견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정의당	이창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기타 의견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는 <의제4. 시민미디어·소수독립언론 활성화 정책 강화>에 대해 취지는 좋으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로 언론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는 “현재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당직(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세부 현안들마다 찬성, 반대 또는 수용, 불수용의 형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회신했습니다.

2) <지역미디어 공공성 10대 의제> 원내정당 질의 결과

(질의자: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응답: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무응답: 새누리당, 기독교자유당, 민주당

○ 정당별 답변 내용

지역미디어 공공성 10대 의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1.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관련 규제 기구 위원선임시 지역대표성 보장	찬성 (공약사항)	기타의견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찬성 (공약사항)
2. 공영방송 이사회 지역대표성 보장	찬성 (공약사항)	기타의견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찬성 (공약사항)
3. 지역민방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찬성 (공약사항)	기타의견 (사회적 공론화 통해 점진적 추진)	찬성 (공약사항)
4. 지역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활성화	찬성 (공약사항)	찬성	찬성 (공약사항)
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	찬성 (공약사항)	기타의견 (찬성이지만 구체적인 방안마련위한 논의 필요)	찬성 (공약사항)
6. 지역방송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결합판매제도 개선	찬성 (공약사항)	찬성	찬성 (공약사항)
7. 독립된 유료방송 지역채널 설립	찬성 (지역채널의 도덕적 해이 부작용 방지책 필요)	기타의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찬성 (공약사항)
8. 지역성지수 개발에 따른 지역방송 재허가 심사 항목 마련	찬성 (공약사항)	찬성	찬성 (공약사항)
9.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강화	찬성 (공약사항)	찬성	찬성 (공약사항)
10. 소수 독립 언론 활성화 방안	찬성	기타의견 (방안마련 필요)	찬성 (공약사항)

지역미디어 공공성 4대 의제 질의서

1. 일반 사항

1) 소속정당 : () 2) 지역구 () 3) 후보성명 ()

2. <지역미디어 공공성 4대 의제> 정책 반영 및 찬반 기표 및 기타 의견

- 아래 의제에 대해 정책으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란에 체크표(V) 또는 동그라미표(O)를 해 주시고, 의제별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지역미디어 공공성 4대 의제	찬성	반대	기타 의견
1. 불법 부당한 언론장악과 언론인 해직 관련 청문회 개최			
2.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언론) 관련 공적 기구 위원 선임시 지역 대표성 보장			
3. 지역신문발전위원회·방송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지원기금 확대			
4. 시민미디어·소수독립언론 활성화 정책 강화			

제 20대 총선 미디어 의제를 제안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언련)은 20대 총선을 맞아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의제'를 부산 지역 18개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은 미디어 의제는 지역별 언론시민단체를 통해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역구 후보자와 각 정당에게 질의할 계획입니다. 답변 결과와 수용 여부는 공식 발표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당선 이후 정책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감시하겠습니다.

-20대 총선 부산민언련 <미디어 정책 질의서>

1. 불법 부당한 언론장악과 언론인 해직 관련 청문회 개최

언론의 정치적 독립 보장은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KBS 고대영 사장 선임시 청와대 홍보수설 개입 의혹 등 공영방송 사장을 비롯한 MBC, YTN, 연합뉴스에 대한 정치권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MBC 백종문 녹취록에서 드러났듯이 정치권의 개입 과정에서 방송 독립성을 지키려던 언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당하거나 부당한 전보 등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태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실시해 불법부당한 언론장악과 언론인 대량 해고에 대한 진상을 밝힌다. 또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부당한 해직과 징계를 당한 피해자는 원상 회복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언론) 관련 공적 기구 위원 선임시 지역 대표성 보장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언론 정책 역시 중앙 지상파, 종합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고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언론 관련 공적 기구의 위원 선임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언론 관련 규제기관 및 진흥기관, 부문별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 추천과 구성을 보장한다.

먼저 방통위원 선임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산하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개정하여 지역 인사의 구성을 보장한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 선임에 있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한다. 가령 현행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에서 KBS의 공적 책무로 '지역성 구현을 명시'한다. 또 이사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3. 지역신문발전위원회·방송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지원기금 확대

미디어환경 변화로 지역언론은 위기에 처해있다.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제도 역시 미흡하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한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현행 조항은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요건에 '지역대표성'을 명시한다. 둘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에 지상파 네트워크 규약에 대한 검토 및 지역방송에 대한 편성권 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방송의 지역성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방송발전통신기금의 독립적인 조성을 명시하고, 해당 기금의 관리·운용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두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방송발전기금으로 전용하거나 추가로 지역 방송통신발전기금(지역 미디어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넷째 기금 지원 대상 선정시 방송사의 공적책임 이행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대상사 선정시 방송사 수익의 주주배당비율, 지역사회 환원비율 등을 평가하여 차등지원 또는 배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 방안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신문 지원정책은 문체부가 주무부서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위탁사업자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할 지발위는 구체적인 사업 운용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사업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지발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 제시'만을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은 기금 총액 확대와 명확한 지원 대상 선정, 그리고 지발위가 사업운용의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여기에 지발위의 위원 구성과 위촉, 심사과정 및 심사기준의 독립성 또한 보장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6년 연장됨으로써 2022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집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금의 총액은 2009년까지 100억 원대로 조성되다 명확한 기준 없이 점차 축소되어 현재 64억 원이다. 반면 지원 대상 2009년 58개 신문사에서 2014년 71개로 증가했다. 재정지원의 규모는 줄이고 지원 언론사의 수만 늘린 전형적인 '실적 위주의 기금 운영' 행태는 개선한다.

4. 시민미디어·소수독립언론 활성화 정책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여론 활성화를 위한 시민미디어 정책을 마련하고 소수 독립언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시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공 목적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확대하고 지원한다.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밀착

형 미디어로 지역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시민미디어다. 2009년 정식으로 7개 사업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 공동체라디오 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마을미디어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 마을신문, 마을방송, 팟캐스트 등 다양한 마을미디어 활동이 진행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마을미디어 관련 정책은 미비하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덧붙여 지역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상파 방송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과 지원을 확대한다.

2015년 11월 3일 통과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터넷 신문의 등록요건을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실험에 나서거나 소규모 인력으로 디지털에 특화된 저널리즘을 수행하려는 창의적 시도에 걸림돌이 될 규제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인터넷 신문사 중 다수가 인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등록 상태에 놓이게 되면 포털 검색에서도 차단되어 인터넷 여론 형성의 한 축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소수 독립언론 활성화와 여론 다양성을 위해 3명 이상으로 등록요건을 완화한다.

지역 미디어 공공성 10대 의제 질의서

1. 일반 사항

1) 정당명 :

2. 지역 미디어 공공성 10대 의제 정책 반영 및 찬반 기표 및 기타 의견

아래 10대 의제에 대해 정책으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란에 체크표(V) 또는 동그라미표(O)를 해 주시고, 의제별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지역 미디어 공공성 10대 의제	찬성	반대	기타 의견
1.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관련 규제기구 위원선임시 지역대표성 보장			
2. 공영방송 이사회 지역대표성 보장			
3. 지역민방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법 개정			
4. 지역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활성화			
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 는 특별법 개정			
6. 지역방송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결 합판매제도 개선			
7. 독립된 유료방송 지역채널 설립			
8. 지역성지수 개발에 따른 지역방송 재 허가 심사 항목 마련			
9.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및 지역신문 발전기금 강화			
10. 소수 독립 언론 활성화 방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미디어 공공성 10대 의제

1.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관련 규제기구 위원선임시 지역대표성 보장

☞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방송관련 규제기관 및 부문별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추천과 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선, 방통위원 선임시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산하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개정하여 지역 인사의 구성을 보장한다. 특히 지역방송의 공적 광고 재원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어떠한 정책 결정권한도 없는 형식상의 기구일 뿐이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방송 뿐 아니라 종교방송 및 취약매체를 위한 공적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한다.

2. 공영방송 이사회 지역대표성 보장

☞ 지역방송 사장선임 및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사선임구조가 필요하다.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방송법에 제시된 KBS의 공적책무로 지역성 구현을 명시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가령, 현행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사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는 명시규정을 두어야 한다. 가령, 방송법 제46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 ③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3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식이다.

지역MBC의 경우, 현 방문진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데, 구체적으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문진법 제6조(임원)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MBC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 2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네트워크 재허가 과정에서 관련 조항의 실행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3. 지역민방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 지역민방 지배구조 개선은 지역민방의 대주주가 직접 방송사 경영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민방의 소유·경영·제작 및 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를 강제하는 법제화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송법상에 규정된 소유와 경영, 제작 및 편성 간의 분리, 그리고 편성규약의 체결과 시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선언적 수준의 방송법 규정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규약의 수평적 교체가 필요하다. 현행 방송법(제85조의2(금지행위))에서는 "7. 네트워크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방

송사업자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됐던 미디어 크리에이트와 SBS의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편성권 침해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방송법 제42조의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에 “5. 네트워크 규약의 공정거래질서 훼손 및 지역방송에 대한 편성권 침해, 지역방송 발전에 대한 저해 여부에 대한 평가”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방송사의 편성권 보호를 위해 지역방송사들이 보다 화급한 지역뉴스와 스포츠를 편성할 필요가 있거나 네트워크의 쇼프로그래미 자신의 지역사회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 경우,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편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네트워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역)방송국이 방송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활성화

☞ 현행 방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청자 권리는 제87조 시청자위원회와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방송사의 편성, 심의, 내용 등 방송 콘텐츠에 맞추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항들이 시청자들의 주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결국 관련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평가 규칙에 시청자의견 수렴의 적정성,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운영의 실질성문제다. 이는 현행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지역사회 사교클럽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권력관계를 적절히 대표하는 시청자위원 구성을 위해 노조 등 방송구성원 및 지역시민사회 등에 관련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시청자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시청자들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지역방송 편성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방송사 정보에 대한 시청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채널 방송 뿐 아니라 각종 결합상품으로 통신 서비스까지 이용하는 환경임을 고려하면 콘텐츠를 넘어 방송 채널의 구성, 통신 서비스 평가, 부당한 위약금 등 방송통신 융합에 걸맞는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시청자들의 역할은 협소하지만 방송사가 아닌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에게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IPTV법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제35조)가 유일하다.

개정 방송법에서는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SO, 위성방송, IPTV에 가입한 시청자들의 위원회를 지역별로 구성한다. 시청자위원회의 지역은 현재 77개 SO 권역을 광역화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로 정한다. 지역별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은 ①지역 유료방송 이용실태 조사 ②방송통신 결합상품 가격 공개 요구 ③채널 변경 시 채널 추천권 ④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익채널 추천권 ⑤케이블 지역채널의 콘텐츠 제작 및 편성권 등으로 정한다.

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

☞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을 위원장

으로 한다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조항은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요건에 '지역대표성'을 명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에 지상파 네트워크 규약에 대한 검토 및 지역방송에 대한 편성권 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방송의 지역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지역방송발전통신기금의 조성을 명시하고, 해당 기금의 관리·운용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두어야 한다. 현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방송지원계획(2015년 6월)은 공민영 지역방송사들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총액의 50%에도 못 미치는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독립적인 지역방송발전통신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방송발전기금으로 전용하거나 추가로 지역 방송통신발전기금(지역 미디어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추가되는 재원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현재 납부하고 있지 않은 홈쇼핑 및 통신결합상품 매출액을 기금 납부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한다.

네 번째로 기금지원대상 선정시 지원대상 방송사의 공적책무이행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대상사 선정시 방송사 수익의 주주배당비율, 지역사회 환원비율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 또는 배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 방안이다. 또한 지원 부문 역시 지역 방송에게 시급한 콘텐츠 유통이나 종사자들의 재교육에 쓰이기보다 제작비 지원의 비중이 더 높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성과에 대한 국회 관련 상임위의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 방송 종사자들의 의견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될 절차의 수립이 필요하다.

6. 지역방송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결합판매제도 개선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2015년 상반기부터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장기적 위축을 대비하기 위해 지역 방송과 중소방송사 등 취약매체에 대한 결합판매 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현재 공민영 미디어랩에서 연간 광고판매 총액의 일정 비율을 결합판매 몫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방송의 경쟁력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교차보조와 같은 공익적 제도로써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합판매 지원 매체에 대한 결합판매는 현재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랩의 광고판매액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을 넘어선 유료방송 광고시장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지원 매체의 결합판매 비율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체제작 편성 비율 뿐 아니라 인력 채용, 방송 콘텐츠 유통 실적, 경영실적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계량화 된 기여도 등을 통해 지역방송사들이 내부 역량으로 조정가능한 결합판매 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7. 독립된 유료방송 지역채널 설립

☞ 지역 방송의 가장 큰 한계는 다채널 방송 플랫폼에서 접근성이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유료방송사업자들로부터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거나 현재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지원받는다면 증액되는 재원의 일부를 권역별 독립 지역방송채널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한다.

독립 지역방송채널은 현재 케이블 SO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채널의 소유권을 해당 권역 내 공민영 지상파방송사, 지역 언론사, 지역 풀뿌리 미디어 등의 컨소시엄에게 이전한

다. 독립 지역채널은 권역 내 지역방송사와 언론사들의 보도, 시사교양, 예능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현재 제작 중인 자체제작 비중을 높여 본방편성 비율을 높인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지역 방송 및 언론사들의 수익으로 분배한다.

8. 지역성지수 개발에 따른 지역방송 재허가 심사 항목 마련

☞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별 (재)허가 및 승인 심사를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송사업자를 지상파 중앙 방송사, 지역 방송사, 유료방송사업자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지역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첫째, 최고경영자 선임의 투명성. 둘째, 지역 방송 수익의 주주 배당 제한. 셋째,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도 넷째, 지역방송 통폐합의 경우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지역 필요성 반영 평가 등이다.

9.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강화

☞ 2015년 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6년 연장됨으로써 2022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및 집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금의 총액은 2009년까지 100억 원 대로 조성되다 2014년까지 점차 축소되어 64억 원이 되었다. 이에 비해 지원 언론사의 수는 2009년 58개 사업자에서 2014년 71개 사업자로 증가했다. 재정지원의 규모는 줄이고 지원 언론사의 수만 늘린 전형적인 실적 위주의 기금 운영이었다. 기금 액수 뿐 아니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의 위상 또한 문제다. 지역신문 지원정책은 문체부가 주무부서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위탁사업자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할 지발위는 구체적인 사업 운용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사업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지발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제시”만을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은 기금 총액의 확대와 명확한 지원 대상의 선정, 그리고 지발위가 사업 운용의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지발위의 위원 구성과 위촉, 심사과정 및 심사기준의 독립성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신문이 대상이 되는 지원 기금의 두 축인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중 지역신문의 디지털화에 지원되는 액수는 극히 미미하다. 2012년 기준 총 1,589억 원의 언론진흥기금 중 신문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할당된 예산은 8억 원으로 0.2%에 불과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는 디지털 전환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언론진흥기금이 주로 취재지원과 유통구조 개선에 비중을 두는 반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구현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주로 종이신문에만 국한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신문 또한 크로스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해야 지역기업과 지자체에 의존하는 채원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독자적인 생존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 역량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전국 일간지보다 역량과 재원이 모두 부족한 지역신문에 대한 디지털 사업 및 재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신문의 종사자들은 저임금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추가 업무와 노동 강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중앙 일간지보다 더욱 절실한 지원이 요구된다.

10. 소수 독립 언론 활성화 방안

☞ 2015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상시고용 인력 확대를 통해 인터넷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이버 언론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어뷰징을 비롯한 사이버 언론 행위의 발생 원인이 인터넷 신문사의 피고용인 수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해 어뷰징으로 수익을 올리는 대형 언론사들과 포털 뉴스 서비스라는 근본 구조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인력 수에 대한 제한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실험에 나서거나 소규모 인력으로 디지털에 특화된 저널리즘을 수행하려는 창의적 시도에 걸림돌이 될 규제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인터넷 신문사 중 다수가 인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등록 상태에 놓이게 되면 포털 검색에서도 차단되어 인터넷 여론 형성의 한 축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정의당에서 제출한 위헌소송과 같이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